

행 정 자 치 부

주 의 요 구

제 목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축산물 확인검사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경상남도 본청

내 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같은 법 제4조, 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 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관할 행정기관 회수계획, 회수결과 등 보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3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허가(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회수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허가(신고)관청은 관내 축산물 영업자로부터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여부를 확인하고 유통된 제품에 대하여는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경상남도 본청,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관내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검사 의뢰

한 축산물가공품 중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17건에 대해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았으나,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함안군, 고성군은 부적합 통보 받은 9건에 대해 회수가 종료된 시점까지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위반(부적합)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나 행정처분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고 종결하거나 확인검사 없이 4/5이상 회수로 행정처분 감면을 결정하였고,

경상남도 본청, 김해시는 유통되지 않아 확인검사가 필요치 않은 해당 축산물가공품 8건에 대해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4/5이상 회수로 행정처분 감면을 결정하는 등 사후조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경남도지사는

앞으로 축산물가공업소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검사 의뢰하여 부적합 통보를 받아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해당 회수 대상 축산물의 유통여부를 확인 후 확인검사나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